

품종보호권 등록증 []정정발급 신청서
[]재 발 급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	
	주 소	전화번호	
대 리 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사 건 의 표 시	품종보호권 등록번호	품종보호권 등록일	
작물의 명칭			
품종의 명칭			
정정발급/재발급 사유			
사유가 발생한 날(재발급만 해당함)			

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산 림 청 장
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
국립수산과학원장

첨부서류	1. 품종보호권 등록증(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정정발급: 없음 재발급: 6,5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"정정발급/재발급 사유"란은 정정발급의 경우에는 정정의 구체적인 사유를, 재발급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.
2. 그 밖의 사항은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, "신고인"을 "신청인"으로, "신고서"를 "신청서"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